

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행정지원과)

의안번호	제 64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2. 11. 14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민선8기 현장과 민생중심의 구정 운영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 신설(안 제5조)

○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신설

나.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(안 제6조)

○ 국 명칭 변경 : 복지문화국 → 복지교육국

○ 복지정책과, 생활보장과, 어르신장애인과, 여성가족과, 아동청소년과, 교육지원과

○ 과 변경 사항

- 과 명칭 변경 : 어르신복지과 → 어르신장애인과

- 아동청소년과 신설

- 부서 이관 : 교육지원과 → 복지교육국 / 문화체육과 → 행정문화국

○ 사무분장 변경 사항

- 복지정책과 : 1인 가구 지원 추가

다.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(안 제7조)

○ 주택정책과, 주거정비과, 도시계획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

○ 과 변경 사항

- 도시재생과 폐지

라.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(안 제9조)

○ 기획예산과, 재무과, 세무1과, 세무2과, 부동산정보과

○ 과 변경 사항

- 주민공동체과 폐지
- 과 명칭 변경 : 지적과 → 부동산정보과

마. 안전생활국에 두는 과 및 사무 분장(안 제10조)

○ 도시안전과, 청소행정과, 일자리정책과, 지역경제과, 환경과

○ 과 변경 사항

- 과 명칭 변경 : 일자리경제과 → 일자리정책과
- 지역경제과 신설

○ 사무분장 변경 사항

- 도시안전과 :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추가

바. 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및 사무 분장(안 제11조)

○ 국 명칭 변경 : 행정국 → 행정문화국

○ 행정지원과, 자치행정과, 문화체육과, 홍보전산과, 민원여권과

○ 과 변경 사항

- 부서 이관 : 교육지원과 → 복지교육국 / 문화체육과 → 행정문화국

○ 사무분장 변경 사항

- 자치행정과 : 마을만들기 및 마을미디어 운영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제13조(시·군·구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~ ④ (생략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2. 11. 4. ~ 2022. 11. 7.

입법예고 결과 : 부서 제출의견 3건

부서	개 정 안	수 정 안	검 토 의 건	반영결과
교통 지도과	○ 제8조 제2항 제2호 주·정차위반 지도·단속 및 주차장 운영관리, 승용차 요일제 추진 및 평가, 운수사업체 지도·감독, 운수과정금 및 주·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	○ 제8조 제2항 제2호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, 운수사업체 지도·감독, 운수과정금 및 주·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· 징수, 주·정차위반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	승용차요일제 추진 및 평가는 「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조례」 폐지(2020.1.9.)에 따라 사무분장 삭제 팀 업무분장에 따라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, 주·정차위반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 사무분장 분리 수정	반영

부서	개 정 안	수 정 안	검 토 의 견	반영결과
일자리 경제과	○ 제10조 제2항 제3호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 기획,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(지역공동체, 공공 근로사업 등), 고용 정보·훈련에 관한 사항, 창조산업지원·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, 청년지원에 관한 업무	○ 제10조 제2항 제3호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 기획,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(지역공동체, 안심 일자리사업 등), 고용 정보·훈련에 관한 사항,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지원에 관한 사항,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,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청년일자리 지원, 청년정책 발굴·지원에 관한 업무	2021년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안심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분장 수정 4차 산업 육성·지원 및 사업 다변화에 따라 사무분장 수정 청년지원 사업 명확 화를 위한 사무분장 구체화하여 수정	일부 반영
	○ 제10조 제2항 제4호 사회적경제,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업무,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조합 업무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장의 경영·시설 현대화 농수산물 유통 및 관리, 물가안정,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관리, 동물보호 업무	○ 제10조 제2항 제4호 사회적경제,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업무,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조합 업무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·육성, 소상공인 지원 업무, 전통시장의 경영 현 대화 및 시설 현대화, 골목상권 육성 및 골 목형 삼점가 활성화 업무,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업무	지역경제팀이 소상공 인지원팀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중점적인 사업이 되는 업무로 사무분장 수정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포괄적 의미를 함축할수 있게 기존의 시장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로 두고, 추가된 중점사업에 대해 사무분장에 추가	

부서	개 정 안	수 정 안	검 토 의 견	반영결과
자치 행정과	○ 제11조 제2항 제2호 동행정 평가 및 관리 업무, 현장행정, 사회 단체관리,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, 자치 회관 운영, 민·관 협치 업무, 주민참여예산 업무, 마을만들기 지원 및 마을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	○ 제11조 제2항 제2호 동행정 평가 및 관리 업무, 현장행정, 사회 단체관리,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, 민·관 협치업무, 주민참여예산 업무, 마을만들기 지원 및 마을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	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 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2020년 전동 확대 운영되면서 주민자치회로 사무 분장 수정	반영

4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현장과 민생중심의 구정 운영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개편 내용은

■ 한시기구 신설(안 제5조) :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신설

■ 국명칭 변경

- 복지문화국 → 복지교육국

- 행정국 → 행정문화국

■ 과 명칭 변경

- 어르신복지과 → 어르신장애인과

- 지적과 → 부동산정보과

- 일자리경제과 → 일자리정책과

■ 과 신설

- 아동청소년과

- 지역경제과

■ 과 폐지

- 도시재생과

- 주민공동체과

■ 부서 이동

- 교육지원과 : 행정국 → 복지교육국

- 문화체육과 : 복지문화국 → 행정문화국

■ 사무분장 변경

- 복지정책과 : 1인 가구 지원 추가
- 도시안전과 :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추가
- 자치행정과 : 마을만들기 및 마을미디어 운영 추가

○ 금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